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등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6호)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9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94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3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등(김소희, 강경숙, 김도읍의원안)	5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정보공유 강화(최수진의원안)	14
【참고자료 1】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20
【참고자료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21

I . 제안경위

【김소희의원안】

1.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강경숙의원안】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김도읍의원안】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7.
3. 회부연월일 : 2025. 2. 18.

【최수진의원안】

1.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9.
3. 회부연월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소회의원안】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강경숙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김도읍의원안】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등).

【최수진의원안】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Ⅲ. 검토의견

1.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등(김소희, 강경숙, 김도읍의원안)

개정안들은 학생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현행	김소희의원안	강경숙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이를----- ----- ----- -----.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 및 역할) ① 국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 ----- ----- -----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제1항의 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부배치에 대해서는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0조의6¹⁾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²⁾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 요건, 업무 및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 간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은 2017년 11월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바 있음. < 참고자료 1: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

이후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2023년 12월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³⁾」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교육부 보도자료, 2023.12.6.자) 참고

마련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⁴⁾ 참석 및 자문 등 조사관 지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화⁵⁾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였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은 2023년도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2024년도부터 1,127명(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1,133명(현원)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음.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예방)** 주기적으로 학교에 방문,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현황파악 △예방 교육 △신고창구(117 등) 및 대응요령 등 안내
※ 경찰서·교육지원청/학교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 **(사안대응)** 117·학교·교사 등의 학교폭력 신고(상담)에 대응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하여 가·피해학생 징계·보호방안 논의
※ SPO는 위기청소년 선도·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대응·사후관리 등 재범방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전문인력인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전담, 수사 중**
- **(소년법 선도)** 소년법 대상 경찰단계 선도제도(전문가참여제·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연계,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 등 사안별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 △정보수집 △아웃리치 △소년사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지원기관 연계 등 청소년 비행예방

자료: 교육부

4)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 54)

- 참석 대상: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보도사안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운영 방법: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시·도 경찰청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및 현원 현황】

(‘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정원	1,130	135	65	49	54	33	32	24	7	166	63	58	43	66	69	73	87	88	18
	현원	1,040	145	61	41	49	30	31	22	7	146	57	58	40	55	67	72	73	74	12
'21	정원	1,122	135	65	49	54	29	32	24	7	165	63	58	42	66	67	73	87	88	18
	현원	1,030	142	63	43	50	25	29	22	6	154	52	55	40	54	66	72	75	70	12
'22	정원	1,023	133	62	44	48	26	29	22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0	133	63	42	42	25	25	20	7	146	48	53	35	50	60	68	69	71	13
'23	정원	1,022	133	62	44	48	26	29	21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6	134	61	42	43	26	29	21	7	145	51	55	36	47	59	65	68	72	15
'24	정원	1,127	149	66	51	55	29	31	23	9	175	64	57	42	63	63	72	78	83	17
	현원	1,133	150	68	47	56	29	32	23	9	185	64	58	42	58	63	71	78	83	17

주: (SPO 1인당 담당 학교수, 현원 기준) '20년도 11.3개교, '21년 11.4개교, '22년 12.7개교, '23년도 12.7개교, '24년도 10.7개교

자료: 교육부

다만,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두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전담 학교 수가 10.7개에 달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⁶⁾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음.

6)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25.2.18.자) 참고

이에 개정안들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소희의원안)은 ‘학교폭력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려는 내용이고,

(강경숙의원안)은 ‘모든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되 세부배치에 대해서는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임.

(김도읍의원안)은 ‘모든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들과 같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학생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구체적으로 (김소희의원안)은 학교폭력과 함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의무 배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로 하고 있으나,

(강경숙의원안)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학교⁷⁾를 대상으로 하되 학교전담경찰관의 세부배치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도읍의원안)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로,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⁸⁾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16조에서 가해자⁹⁾의 범위에 “교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생 략)
- 1의3. (생 략)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 5.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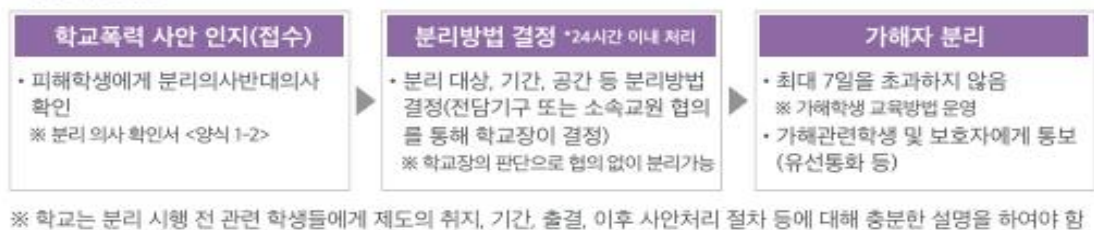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일시보호(제2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6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리의 취지)**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 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분리절차】



자료: (2024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 45

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다만, (강경숙의원안)은 학교전담경찰관도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서는 긴급보호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단기간¹⁰⁾ 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배치 범위 및 추진 일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음.¹¹⁾

10) (김소희의원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강경숙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김도읍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정하고 있음.

11)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 산정 근거 및 SPO 현원 배치 기준과 관련하여 정원은 관내 학교 수, 학생 수, 학교폭력 검거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요청하고 있고, 현원 배치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서장(경위 이하)·시도청장(경감)의 권한으로 관내 치안 실정에 따라 운용·배치하고 있다고 함.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정보공유 강화(최수진의원안)

개정안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처분 사유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되,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⑧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 ----- ----- <u>하</u> 며,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처분 사유를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⑩ ~ ⑰ (생략)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략)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u>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위급한 신체적 폭력(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사안 등),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등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u>

④ (생 략)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찰관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u> ⑤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⑥ <u>그 밖에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전담경찰관은 수집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6조¹²⁾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가해자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와 피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정하고,

제17조13)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14))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조치로 본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 <참고자료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또한, 성폭력 및 위급한 신체적 폭력(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사안 등),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등의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므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의 장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단계와 내용, 조치 의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 (7일 이내 연기 가능)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이 바람직 •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도 가능)
심의 및 의결,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고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 의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조치결정 통보(문서)
피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환경 변경) - 단,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참고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¹⁵⁾」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으로 교내·외 순회지도 등 학교전담경찰관과 유기적 협력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교외 신고방법으로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는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와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17조제9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¹⁶⁾」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⁷⁾」 개정(2024년 2월)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15) (2024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p. 19, 23, 26, 31 참고

16)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교육부 보도자료, 2023.12.6.자) 참고

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아울러 현행법 제19조18)는 학교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전담경찰관에 관한 제20조의6에서 규정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92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소년업무규칙

소년업무규칙[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3절 학교전담경찰관

제12조(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학교전담경찰관 선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선발한다.

제14조(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3. 학교 내 일진 등 폭력씨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선도
5. 학교와 경찰서간 연락체계 구축
6.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 보호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탐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8.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및 가·피해 청소년 선도·지원

제15조(학교와의 협력)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참고자료 2】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 해 학 생 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 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 14조제 5항에 따라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할 수 있음	
		2호	피해학생 신고·고발 등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 교 에 서 의 봉사	4~6점							
	외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또는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경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